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0. 11 선고 2018나5501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0. 11 선고 2018나55010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4. 12 선고 2017가단14530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

담당변호사 백록담

피고, 항소인B

변론 종결2018. 8. 23.

판결 선고2018. 10. 11.

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가단14530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6. 5. 10. 접수 제238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박인식

판사남성우

판사홍지현

별지